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3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정진욱 · 오세희 · 조계원
정준호 · 안도걸 · 장철민
허영 · 박균택 · 박지원
김문수 · 박해철 · 이재관
이주희 · 강준현 · 양부남
이광희 · 김 윤 · 이병진
채현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

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0조에”를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제10조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내용”을 “내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에”를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에”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금융 관련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관련 평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등과”를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회공헌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 ----- -----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제10조에----- ----- -----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6. (생략)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u>내용</u> 8. ~ 11. (생략) ③ ~ ⑨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u>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u>	1. ~ 6. (현행과 같음) 7. ----- -----<u>내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다)</u> 8. ~ 11.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에</u>
--	--

② ~ ⑪ (생략)

<신설>

제28조(자금지원) ① (생략)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금융 관련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관련 평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